



취업 후 학자금 상환 납부고지서 재증

() 납부고지 내용

귀하는 「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」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및 제40조에 따라 다음 채납자의 제2차납부의무자(양도담보권자)입니다.			
채 무 자	상 호 (성 명)		사업자등록번호 (생년월일)
	사업장(주소)		
구 분		의무상환액	합 계
①			
②			
③			
위 의무상환액은 ()에 귀속되는 ()에 따른 ()으로서 채무자에게 부과되었으나, () 현재 연체금 포함 ()원이 납부되지 않아, ()인 귀하에게 미납금액의 ()인 ()원에 대한 납부의무가 있음을 통지합니다.			
이 납부고지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(☎)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			

납부고지서

납부번호	세무서 코드	연월	소득구분	발행번호
상호(성명)			계좌번호	
사업자등록번호 (생년월일)			귀속 연월	
사업장(주소)				

납부기한	년 월 일 까지
의무상환금액	
연체금액	
계	

위 금액을 위 계좌번호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

년 월 일

세무서장 (인)

❖ 납부 방법(납부가능시간: : ~ :)

-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홈페이지(www.icl.go.kr)를 통한 전자납부
- 온라인 계좌이체, CD/ATM 계좌이체
- 금융기관 방문을 통한 무통장 입금(계좌이체)

※ 다만, 은행창구를 통한 계좌이체는 금융기관별 영업시간 내에 납부 가능함

❖ 취업 후 학자금 상환은 국세나 지방세와 같은 공과금이 아니므로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 따라 금융기관 방문을 통한 창구 납부는 무통장 입금형식(계좌이체)으로만 가능하며, 이 경우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